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379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안일자 : 2021년 5월 25일

○ 회부일자 : 2021년 5월 31일

2. 제안이유

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를 조성하고자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이념 및 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민'의 정의를 정비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 나.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이념을 정비함(안 제3조).
- 다.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비함(안 제7조).
- 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의 원칙 및 지침 준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 및 도시공원 위원회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13조).

- 바.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기능을 정비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사. 유니버설디자인에 시민의 참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 도록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 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사업을 규정함 (안 별표 1 및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1. 4. 1.~4. 21.)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안 개요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독자성 및 합리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대상 유니버설디자인의 의무 적용 의 법적 근거를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개정의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 다양성에 대한 존중, 사회 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유 니버설디자인 적용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¹).
-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범용디자인, 포용디자인이라고도 표현하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은 미국의 건축가로널드 메이스(Ronald L.Mace)가 최초로 용어를 정리하였고, 신체적으로 불편한 일상생활의 물리적 불편함을 없애고 기능적 한계를 돕는 배리어프리디자인(Barrier Free Design)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디자인으로 볼 수 있음.
- 현재 국내에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등 배리어프리 중심의 법률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내용이 그동안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교통약자, 노인, 임산부 등의 다양한 사용자층을 포괄하는 법률도 있으나 유니버설디자인이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디자인의 개념이 반영된 상위법령이 없는 상황임.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주요 제도 현황>

연번	법규명	목적	대상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997년)	장애안노안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	장애인, 노인, 임산부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2005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시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 함으로써 교통약지의 시회참여와 복지증진	교통약자

¹⁾ 장혜진, '사회변화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방향성', 성신여자대학교, 2020, p.165.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년)	변리구제 등에 관한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2008년)	건축물 등의 개별시설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차관리여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5	장애물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2010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시항 규정	장애인
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2010년)	안전한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쾌한 보호한을 조성하고 등 위 함으로부터 권의 생명과 산체를 보호하고 권의 삶의 길을 향상시 킨으로써 공공의 복리 중진	불 특 정 대상
7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2011년)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에인 보호구역을 지정관하는 잘라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항 규정	어린이, 노인
8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2011년)	장배물 없는 시설의 참여와 확신에 중점을 두고 건축물을 대상으로 편 의 설 의무설이 여부를 평하여 인증하는 제도	보행약자
9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2016년)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	불특정 대상

○ 이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법·제도의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5곳 광역지자체에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과 사업의 추진 방안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적용범위가 물리적영역에 한정되어 정보, 서비스, 문화, 교육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²).

²⁾ 설영동 외, '공공영역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 문집 제15권 1호 통권 62호, 2020, p.198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시도명	조례명	목적
1	경기도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2013년)	환경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
2	전라북도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2015년)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 영위
3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2016년)	도민을 비롯한 제주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조성
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2017년)	생활환경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화된 디자인을 도입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2017년)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보편적인 환경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조성

- 한편, 서울시는 관련 법정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16.5월 동 조례를 제정하고 유니버설디자인통합가이드라인 수립에서 더 나 아가 '20.8월 유니버설디자인을 전면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서 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행정1부시장 제204호)'을 수립 하여 서울시 행정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관련 정책들을 통 합하고자 하며,
 - '21.1월부터 모든 공공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권고수준을 넘어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20.6월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출범시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시키는 등 유니버설디자인을 시정의 핵심철학으로 삼고자 하는 바,이러한 정책 운용의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제7호의 경우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 적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술 발전 속에서 유니 버설디자인을 통해 개인 또는 집단이 소외받지 않도록 선제적으 로 대응하고자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 이념을 추가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20.8.월 서울디자인재단에서 'UD 라이프스타일 제품디자인 공모전' 개최하였고 결과는 아래와 같음.

<UD 라이프스타일 제품 디자인 공모전 결과>

구분	상격	이미지	작품명
일반	대상	7 over 100	Diabetes Step (당뇨 환자를 위한 슬리퍼) - IOT 연동 발 상태를 통해 당뇨병환자 상태 관리
기업	대상		브래들리 타임피스 - 저시력자를 위한 손목시계 - 저시력자 중심 라이프스타일 제안
일반	금상	The section of	요양시설용 이동식세면대 - 간병인의 노동감소와 업무 효율을 위한 요양시설용 이동식 세면대 디자인
기업	금상	ルズル	플레이웍스 - 1인 사용자를 위한 가구 세트

- 그 외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환경에서 농인과 농인, 농인과 청인사이의 감정 전달 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텍스트와 이모티콘을 결합한 'AI

기반 수화통역 및 수화티콘'제작을 통해 정보의 격차를 줄이고 원활한 교류를 이끌어 내며3),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제품이나 환경 디자인 분야에서 유니버 설디자인을 연구하고 실무에 적용했던 것처럼 기능성 게임 콘텐츠 분야에서도 노년층만을 위한 복지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게임성 높고, 누구나 즐기고 싶어지는 유니버설 기능성 게임디자인의 방향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⁴⁾.

기존에는 건축과 환경을 중심으로 한 공공 시설물 중심으로 적용의 범위가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신기술과 융합한 제품,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에도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의 경우 시장의 책무에 시책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조직, 재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서울시는 2020년 모법이 없는 상황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전담 기구인 '유니버설디자인센터'설치·운영, 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 인 적용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2020~2024)'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립하였으며,

³⁾ 박상아 외,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AI 기반 수화통역 및 수화티콘 디자인 제안', 한국HCI 학회, 2021, p.946.

⁴⁾ 김현정, '노년층을 위한 기능성 게임의 유니버설디자인 방향성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학학회, 2017, p.263

민간에서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후속계획의 수립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가늠할수 있는 지표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 안 제10조의 경우 기존 '가이드라인'이 영어식 표현이므로 '적용 지침'으로 순화하고자 하며, 점검표 및 시설 유형별 지침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면적, 경사도 등 과도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들의 정리를 통해 지침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포괄 적으로 규정하며, 현재 유니버설 통합가이드라인 외에도 사례집 성격의 시설유형별 적용 지침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는 것임.
- 다만, 현재 점검표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체크방식의 모호성과 항목의 혼용에 따른 판단을 최소화하고 비전공자들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시각화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재점 검을 통해 효율적인 모니터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안 제11조의 경우 시 또는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관 런 사업에 대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준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는 '16년 도시환경의 기본이 되는 가로, 건축물, 공원 등에 대해 관련 법령·지침 15개를 종합 단일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관리 점검 행정 체계가

미흡하여 '19년 우리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강제적용 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시정 전면 확산과 서울시 각종 심의 및 제도 안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이 통합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의무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즉 배리 어프리 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10년 동안 인증 주체별 인증 건 수는 공공부문이 약 80%, 민간부분은 20%로 공공에 편중돼 있는데5) 현재 조례나 가이드라인이 공공영역 위주로 수립되어 있으므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하고 사회통합을 추구하기 위 해 신기술 출현과 사업 다각화에 따라 민간영역에서 유니버설디 자인 적용이 더욱 확대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안 제13조의 경우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 의 심의·의결 또는 자문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 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를 추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질적인 적용범위를 확장하고자 함.
 - 이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와 심의 절차 연계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확장시키려는 지자체 중 최초의 시도로써 절차적 중복성을 방지하면서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⁵⁾ 장혜진, '사회변화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방향성', 성신여자대학교, 2020, p.172

- 다만, 현 위원회에서 심의 절차의 누락, 설계자 및 전문가 중심의 평가 등으로 인한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직접 심의에 참여하고 불편요소가 처음부터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안 제20조의 경우 기존에 두서없이 나열되어 있던 유니버설디 자인센터의 기능을 세 가지로 명시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게 하 며,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세밀하게 규정된 센터 업무를 삭제 또는 조정하고,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인식 확산에 대한 기능 을 추가하고자 함.
- '18.10월,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조성·운영 민간위탁 심의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 대한 "디자인정책과와 서울디자인재단과의 업무 역할 구분 및 연계를 보완해달라"는 조건부로 승인하였고,

이에 디자인정책과는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 및 평가, 컨설팅 및 사업발굴,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은 체험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상품, 제품개발 등 산업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를 보완하였으나.

'20.10월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디자인정책과의 유니버설디자 인 업무 대부분을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수행하고, 디자인정 책과는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인증제 운영 및 유니버설디자인 센터를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분담되어 있으므로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주체별 역할>

※ 추진 주체별 역할 및 체계		
서울시	 혐의회 총괄, 정책 수림 및 조례 등 제도개선, 인증제 운영,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지도감독) 	
UD 센터	• 정책 실행 연구,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및 <mark>모니터링</mark> • 시인 대상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운영, 홍보	
서울디자인재단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조성 및 전시 운영 유니버설디자인 산업 활성화 	

각 주체별 현안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연계되어 고령화, 정보화, 세계화, 다양화에 따라 변화하는 사 회현상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확산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하고 연속적인 사업들을 발굴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서울시는 2015년부터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시행했고 시민체험단을 구성하여 공공공간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편 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배리어프리 개념 그 이상의 개념으로 확장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어린이, 학생, 노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과 고령자,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민 공감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적극적인홍보를 해야 할 것임.

라. 종합 검토 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독자성 및 합리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대상 유니버설디자인의 의무 적용 의 법적 근거를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유니버설디자인은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사회 전체를 인간 중심적, 다양성 포용, 시민 참여, 공정 사회로 나아가고 미래지 향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패러다임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동 조례개정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 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유니버설디자인센터 등 각 주체별 현 안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연계되어 시민 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고.

다양한 계층의 공감형 콘텐츠 발굴 및 제작으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 시정에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 각 사업별 특성화된 매뉴얼 수립과 민간의 자발적 참 여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도 반드시 필요할 것임.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정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 자체 최초의 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

해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권고 수준을 넘어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기능 정립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책 운용에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지영	02-2180-8115